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어촌민박 변경신고 사유를 중요사항 변경에 한정 등〉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2207371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변경신고 사유를 중요사항 변경에 한정	3
2. 신고확인증 재발급에 관한 규정 신설 등	7
3. 인용조문 현행화	10
4. 사업장 폐쇄에 따른 신고확인증 반납 규정 신설	12
5. 행정제재처분 승계기간 설정 및 행정제재처분 이력 확인 근거 마련 ...	18
6. 부칙	24
【참고 1】 농어촌민박제도 개요	26
【참고 2】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양식	27
【참고 3】 농어촌민박 신고확인증 서식	28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 출 일 : 2025. 1. 9.
3. 회 부 일 : 2025. 1.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행정 부담과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면 그 내용과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해당 행정제재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변경신고 사유를 중요사항 변경에 한정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신고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1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u>신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u>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 ----- ----- ----- ----- <u>.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u>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⑤ ----- 제4항----- ----- ----- ----- ----- -----

현행	개정안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 ⑧ (생략)	----- -----. ⑥ ~ ⑧ (현행과 같음)

나. 관계 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경중에 관계없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민박사업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요사항에 한정하여 변경신고를 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중요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의 구별 없이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변경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민박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면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민박사업의 불법·탈법 영업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민박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변경사항을 변경신고 하도록 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행정기관 역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사항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중요사항의 변경 시에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임.

【현행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사항】

○ 소유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고인(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전입일, 주소, 전화번호) ○ 민박 소재지 ○ 민박 명칭 ○ 대지 면적(m²) ○ 용도지역(지구) ○ 하수처리구역 여부 ○ 주택 연면적(m²) ○ 전체 방 수(면적)	○ 객실 수(면적) ○ 조식 제공 ○ 시설 - 건물형태, 화장실 수, 취사시설 수, 식수, 화장실 종류(수세식/재래식), 오수처리시설 용량 등, 단독정화조 용량 등, 난방시설 종류(가스/기름/화목 등), 소방시설 종류(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자동확산소화기 등), 조식제공시설(냉장고/조리·세척시설 등),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가스누설경보기/일산화탄소 경보기)
---	---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자료 재구성

「식품위생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중요한 변경사항에 한정하여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업법례】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주요 사항으로 ① 민박 명칭, ② 민박사업장의 주소, ③ 신고한 주택 연면적의 3분의1 이상의 증감(다만, 규모기준 이내에 한함), ④신고 객실 수 ⑤ 조식제공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함.

다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변경신고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서 예시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 제86조제1항은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규정들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

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변경신고를 요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규정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상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위임근거 규정】

조문	위임 근거 규정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u>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u> 정한다.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u>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u> 정한다.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u>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u>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u>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u>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서비스·위생·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u>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u>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u> 정한다.

※ 자료: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자료 재구성

2. 신고확인증 재발급에 관한 규정 신설 등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신고확인증 관련 조항을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신고확인증 재발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9항 및 제10항).

현행	개정안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⑨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u> <u><신설></u>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⑨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u> ⑩ 제9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나. 관계 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에 신고확인증 재발급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박사업자가 불편을 겪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현행법 제86조제9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6조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86조제8항¹⁾은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의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규정이며,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에 관한 사항은 제86조제1항 및 제5항²⁾에 규정되어 있는 바, 현행법의 인용조문은 체계에 맞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인용조문을 그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의 용어 등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1)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한편, 현행법 제86조제9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인에게 신고확인증을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6조의2³⁾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신고확인증을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132조제1항 제2의2호⁴⁾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따라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확인증 분실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적시에 재교부 받지 못하여 민박주택에 게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사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확인증 재교부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 등을 개정안처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수범자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공인중개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자격증, 등록증 등의 재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

「공인중개사법」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③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3)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4) 「농어촌정비법」 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측량업의 등록) ④ 측량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3. 인용조문 현행화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고, 확인서를 발급·보관·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제5호).

현행	개정안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 ----- -----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나. 관계 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용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2020. 3. 31.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전기사업법」 규정 중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이관되었음.

개정안은 이러한 분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4. 사업장 폐쇄에 따른 신고확인증 반납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자에 대한 신고확인증 반납 규정을 신설하고, 신설 항에 따라 변경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2항 신설, 안 제89조제7항 및 제130조제4항제9호)

현행	개정안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4의2. 제86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9.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현행	개정안
<신설> ② ~ ⑤ (생략)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0조(벌칙)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략) 9. 제89조제5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불법인 게시물·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10. (생략) 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제85조제4항 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⑦ ----- 제6항제3호----- ----- ----- ----- ----- ----- ----- 제6항제2호----- ----- -----. 제130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89조제6항----- ----- ----- 10. (현행과 같음) 제132조(과태료) ① ----- ----- -----.

현행	개정안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8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	4. 제89조제6항-----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관계 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장 폐쇄 명령을 하는 경우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신고확인증을 미반납시 과태료 부과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확인증 재발급 후 반납이 가능하므로 실익이 크지 않고,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2) 농어촌민박협회

농어촌민박협회는 신고확인증을 미반납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반대하지 않으나, 미반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는 등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⁵⁾은 폐업신고를 하려는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폐업신고서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음(참고 2).

이처럼 폐업 시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하는 취지는 폐업한 사업장의 신고확인증이 시중에 남아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자의 영업 등 불법·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현행법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8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사업장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⁶⁾.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은 해당 사업자에 대한 사실상

5)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④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으면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6) 「농어촌정비법」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 4의2. 제86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9.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사업의 영구정지를 의미하므로, 자진 폐업신고 시와 마찬가지로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신고확인증 반납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등을 두고 있지 않음.

신고확인증 등을 반납하도록 한 유사입법례를 살펴보면 반납 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두는 경우와 두지 않는 경우로 구분됨.

【신고확인증 등의 미반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구분	입법례
과태료부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3(1천만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5백만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1백만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1백만원)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50만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1백만원)
과태료 미부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인노무사법」 제19조 「대중문화산업법」 제33조 「도서관법」 제36조 「사회복지사법」 제11조의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자료 재구성

개정안은 사업장 폐쇄 이후 기존 ‘신고확인증’을 활용한 무신고 영업, 사기 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신고확인증 반납 이행을 촉진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미반납시 과태료를 신설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경우 미반납시 과태료과 부과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등의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기간 설정 및 행정제재처분 이력 확인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i)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과 농어촌민박사업의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사업신고를 한 자와 ii)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사업양도, 사망 또는 법인합병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 자에게 종전의 사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① 행정제재처분 효력의 승계기간을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으로 명시하고 ②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와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 및 안제9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 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89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 계한다.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 ----- ----- ----- ----- ----- ----- 그 처 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승계한다.
1.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	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항 후단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자 2. 제87조제1항에 따라 <u>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 자</u>	2. ----- <u>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u> -----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④ 제87조제1항에 따라 <u>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어 제89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u>

2023년 7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방안」(의안번호 제2023-612호)을 의결하였는데, 해당 의결은 행정 제재처분 효과 승계 기간 규정이 미비한 법령에 대하여 승계 기간을 명확히 할 것과 양수인이 영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한 것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중 농림축산식품부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및 관련법령	대상기관
②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기간 마련으로 불확정성 해소	○과잉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효과 승계기간을 명확히 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8조 등 9개 규정에 반영	농식품부 등 5개 기관
⑤ 선의 보호 및 용이한 입증 위한 규정 도입	○행정처분 전력 및 위반행위 사실을 양수인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편법 양도 방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제34조 등 43개 규정에 반영	농식품부 등 13개 기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31p 발췌

개정안은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선의(善意)의 양수인 보호를 위하여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나. 관계 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상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 규정이 미비하여 무기한 승계도 가능하고, 선의의 양수인이 위반행위 사실 및 제재처분 전력을 알기가 쉽지 않아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 규정이 미흡하므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행정제재처분 승계기간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다. 검토의견

현행법 제89조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거나, 규모·시설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사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명령의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양도하거나(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고 해당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가 매입하여 재신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농어촌민박사업)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회피를 막기 위하여 제90조에 행정제재처분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행정제재처분 효력 승계 기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무한정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양수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여지가 있음.

한편,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양도인이 그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사업을 양도할 경우 선의의 양수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보이는 바,

현행법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양수인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⁷⁾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하려는 자가 사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이를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고 있어⁸⁾ 행정제재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7) 「**농어촌정비법**」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민원사례(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부당한 행정제재 효과 승계 없앤다”, 2023.05.11.)

· ㄷ씨는 영업시설 양수를 고려하면서 ‘행정처분 승계 내역을 알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청은 ‘행정처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본인이 아닌 경우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양수인이 영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행정제재처분의 승계기간을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행정제재처분 승계기간을 두고 있는 38개 법률 중 42%가 ‘처분일부터 1년’으로, 45%가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처분일부터 1년’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승계기간 설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승계 기간에 대한 규정 현황】

기간 명시	기간의 기산점(개수)	기간(개수)	비고
유(38)	처분일부터(17)	1년간(16)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등
		3년간(1)	노인장기요양법 등
	처분이 끝난 날부터(18)	1년간(17)	공중위생관리법 등
		3년간(1)	자연재해대책법 등
	처분기간 동안(4)		소음·진동관리법 등
무(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 자료: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방안」 4쪽(국민권익위원회, 2023.07.10.)

6. 부 칙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신고확인증 반납 규정을 신설에 따른 적용범위를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안 부칙).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확인증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나. 관계 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는 자부터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한 적용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첫째,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등의 개정을 위한 준비기간이 소요되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둘째, 신고확인증 반납 경과조치에 관련하여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이 법 시행 이전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까지 모두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할 경우 이미 폐업을 한 기존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행정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하여 별도의 적용례를 두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사업자에게 개정안에 따른 완화된 행정제재처분 승계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7

참고 1

농어촌민박제도 개요

□ 주요내용

- (개념) 숙박시설 설치 및 해당 영업이 불가능한 농어촌지역의 주택에서 예외적*으로 '숙박'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업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제외, 「건축법」상 '주거시설'인 주택에서 숙박영업 허용, 「국토계획법」상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입지에서 숙박영업 허용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 (규모)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은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 가능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 미만이어야 함

- (시설)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소방 안전시설 등 설치 의무

- (대상) 농어촌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전입신고 必)

* 신고자가 단독주택을 직접 소유하고 있을 경우 6개월 이상, 임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

□ 농어촌민박사업 현황

연도	2010	2013	2016	2019	2020	2021	2022	2023
민박수	18,858	24,122	25,032	28,551	29,029	29,308	30,866	33,093

* '23년 기준 농어촌민박 33,093개소, 일반 숙박업 29,723개소, 관광펜션업 786개소

** 강원(6,213개소, 19%), 제주(5,777, 17), 경남(4,028, 12), 경북(3,627, 11), 경기(3,534, 11), 전남(3,389, 10) 順

※ 농어촌민박 실태조사 결과('23년 전국 상위 20개 시군 18,509개소 대상)

① 객실수

구분	합계	1~3개	4~6개	7~9개	10개 이상	확인 불가
신고	18,509 (100%)	11,292 (61%)	5,642 (31%)	971 (5%)	39 (0.2%)	565 (3%)
실운영	18,509 (100%)	10,276 (56%)	6,044 (33%)	1,675 (9%)	56 (0.3%)	458 (2%)

② 신고 면적

합계	80㎡이하	80~160㎡	160~230㎡	230~400㎡	400㎡초과	확인 불가
18,509 (100%)	2,420 (13%)	6,784 (37%)	8,040 (44%)	723 (4%)	259 (1%)	283 (2%)

참고 2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양식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22. 1. 20.>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알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전입일
	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대지 면적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m ²	[] 구역 내 [] 구역 외	
주택 연면적	전체 방 수(면적)	객실 수(면적)	
	m ² 개 (m ²)	개(m ²)	
조식 제공			
[] 제 공 [] 미 제 공			
시 설	건물형태	주택 내 화장실 수	주택 내 취사시설 수
	[] 단 독 [] 다가구		
	식 수	화장실	
	[] 상수도 [] 지하수 [] 기 타	[] 수세식 [] 재래식	
	오수처리시설	용량: m ³ /일	설치연도:
	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
	난방시설 총 대		
	[] 가스 [] 기름 [] 화목(나무) [] 연탄 [] 전기 [] 기타		
	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대
	자동화산소화기: 대	휴대용 비상조명등: 대	
피난구유도등: 개	유도표지: 개		
완강기: 대			
조식제공시설	냉장고: 대	조리·세척시설: [] 설치 [] 미설치	
환기시설: [] 설치 [] 미설치	급수 시설: [] 수도물 [] 지하수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대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참고 3 농어촌민박 신고확인증 서식

[별지 제78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성 명:

생년월일:

민박 명칭:

소재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5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
인